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493 발의연월일: 2020. 10. 13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정재·이주환

이종성ㆍ이 영ㆍ성일종

임이자·최승재·윤창현

엄태영 • 권명호 • 지성호

이명수 · 이종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·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 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 었음.

이에 피난시설 등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제49조제1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
	<u>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</u>
	화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
	의 행위를 한 자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53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	<u><삭 제></u>
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	
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	
행위를 한 자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